

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3. 12. 27(금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경재 위 원 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

김대희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4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45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 보고

○ 제45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⑥ 회의공개여부 결정

-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⑦ 의결사항

가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(2013-46-172)

-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5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·영업·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, 기술적 능력,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심사 결과, 적격 판정된 5개의 법인[엘지전자(주), (사)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, (주)와이더넷, (주)도플소프트, (주)현대페타텔]을 원안대로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

나.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주)로즈존 등 34개 사업자 - (2013-46-173 ~ 206)

-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(주)로즈존 등 34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, 과징금(1개사, 139만원), 과태료(15개사, 2억 7백만원), 시정조치 명령(13개사)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SK텔레콤(주), (주)KT와 (주)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(2013-46-207 ~ 209)

-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(이하 "이통 3사")가 '13.5.17~7.16일과 '13.8.22~10.31일 기간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('13.10.23~12.13)를 실시한 결과, 이통 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, 이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심의하여 이통 3사에 총 1,064억원(SKT 560억원, KT 297억원, LGU+ 207억원)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
라.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- OBS경인TV(주) - (2013-46-210)

-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43차 전체회의('13.12.09)에서 의결

보류함에 따라 재상정한 OBS경인TV(주)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,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,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- 재허가신청서, 추가로 제출한 경영계획,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, 이행각서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등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하고
-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(민영방송) 공통조건 및 권고사항도 동일하게 부과함
- 아울러, 조건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방송사업 운영을 유도할 계획임

마.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국악광주 FM 방송국 - (2013-46-211)

- o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13.9월에 접수된 (재)국악방송의 국악광주 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심의한 결과,
-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방송·경영·기술·소비자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
-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 총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'허가' 의결하고,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'불허' 또는 '조건부 허가'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바.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(2013-46-212)

- o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채널에이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시 부과된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의한 결과,
-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('11.4.21.)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주주인 舊(주)삼양사가 채널A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방통위의 인정을 받지 않아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함
-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(주)채널에이에게 舊(주)삼양사의 채널A 주식 처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사. 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(2013-46-213)

-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▲방송분쟁조정대상자 범위 확대, ▲방송분쟁조정 신청서류 보완절차 신설, ▲방송분쟁조정 불응절차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8] 보고사항

가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▲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, ▲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강화 ▲업계 자율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'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

-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'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감경 등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다. 방송법·IPTV법 통합 법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

-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법과 IPTV법에 대한 제도정비를 위해 운영한 "방송통신 법제 정비 연구반"의 활동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원안대로 접수함

라.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(안)에 관한 사항

-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(안) 및 향후 추진계획을 원안대로 접수함

마.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「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」에 관한 사항

-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

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▲ 방송광고 편성 규제 완화, ▲ 지역·중소방송 방송광고 진흥 기반 조성, ▲ 광고산업 기반 구축 등의 「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」을 원안대로 접수함

9.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별도 통지하기로 함

6. 폐 회 (12:05)